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8 선고 2018가합40868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심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지은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제1선택적 청구]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0. 26.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제2선택적 청구]

제1선택적 청구 중 제2항 기재 청구 부분에서 '원고'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선택적 청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8. 12.경 E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 F 공동주택 개발사업 BIM 용역업무(이하 '남양주 개발 용역업무'라 한다)를 계약금액 60억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9. 1.경 위D과 사이에 정보 제공, 수익사업 공동사업 추진 등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2. 7.경 D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직후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위 16억 5,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였던 G은 D의 대표이사였던 H, I 및 사내이사였던 망 J이 D의 자금을 원고를 통하여 빼돌린 후 이를 피고로 보내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이를 돕기 위하여 원고 계좌로 용역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위 1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곧바로 피고 계좌에 입금하여 줌으로써 H, I 및 망인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고[2017고합534, 572(병합)호],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C는 2017. 10.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인도받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바,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되,원상회복 방법으로 제1선택적으로 원고에게로 주권의 인도 및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거나 제2선택적으로 C에게로 위 인도 및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5. 10. 1. C와 통정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2015. 12. 7. 용역대금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C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6억 5,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2) 제1예비적으로, 원고는 2015. 12. 7. D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송금받는 직후 위 1)항과 같이 C에게 위 돈을 송금하여 C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는바, 원고와 C는 피해자 D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2020. 6. 4. 선고 2018가합543036 판결)에서 원고로 하여금 D에게 2억 1백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1) 공동불법행위자인 C를 대신하여 C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게 되었으므로, C는 원고에 대한 사전적인 구상 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16억 5,000만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3) 제2예비적으로, 원고는 D으로부터 남양주 개발 용역업무를 하도급 받아 그 대가로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D2)과 C의 대표이사였던 망 J이 C가 위 용역업무를 재하도급 받도록 하고 C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해줄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C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인데, 실제로는 C가 원고로부터 위 용역업무를 재하도급받지 않았고, C(및 D)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16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2예비적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은 D의 대표이사였던 H, I 및 사내이사였던 망 J과 공모하여 2015. 12. 7.경 D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같은 날 위 돈을 그대로 망 J이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인 C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원고를 '통로'로 이용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위 돈이 실질적인 이득으로 귀속된 바가 없었으므로, C에게 송금된 돈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16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C가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C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의 사전적인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다.³⁾

설령 C가 원고에 대하여 사전적인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C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사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사전 구상채권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제1예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은 D의 대표이사였던 H, I 및 사내이사였던 망 J과 공모하여 2015. 12. 7.경 D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같은 날 망 J의 관련 회사인 C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C(내지 D)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16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1선택적 청구 및 제2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김주식, 판사 성재준

[별지]

목 록

가. 발행회사: 주식회사 D

나. 주식의 종류: 보통주

다. 권면액: 1주당 5,000원

라. 주식수: 74,200주. 끝.

1) 위 사건은 항소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21) 속행중이다.

2) 다만, 당시 D의 대표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 I이다.

3) 참고로, 수탁보증인의 경우는 민법 제442조에 근거하여 사전구상권을 주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